'11년 AI 차단방역 추진실태 점검계획 보고

2011. 4.

축 산 정 책 관 실
동 물 방 역 과

수신시각 4월12일 4:55PM

'11년 봄철 AI 차단방역 추진현황 점검계획

❑ 배 경

○ '10.12.29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AI가 '11.4월까지 발생되고 있어 지차체 및 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AI 차단 방역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개 요

○ 기 간 : '11.4.18 ~ 4.22 (5일간)

○ 대 상 : '10/'11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군을 중심으로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 도축장(닭·오리) 및 재래시장

○ 점검반 편성 : 민관합동점검반(농식품부/검역원/협회/지자체/ 방역본부)

구분	시 · 도(시·군)	점 검 자
1반	경기도 (안성,이천,평택,화성,여주,용인)	양계협회/검역원(신소연) /지자체/방역본부
2반	경기도 (양주,파주,동두천)	농식품부(전관용)/토종닭협회/지자체/ 방역본부
3반	충청남도	계육협회/검역원(황성철) /지자체/방역본부
4반	전라남도	오리협회/검역원(이철현) /지자체/방역본부
5반	경상북도	토종닭협회/검역원(김영지) /지자체/방역본부
6반	전라북도	오리협회/검역원(김연주) /지자체/방역본부
7반	경상남도	양계협회/검역원(이황) /지자체/방역본부
계	6개 시·도	총 28명(점검반별 4명)

※ 점검일정은 점검기간 내에 시 · 도와 협의하여 추진

❑ 점검대상 및 내용

○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항원·항체 분리지역 관할 시·군·구 및 가축방역기관의 차단방역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

○ 가금사육농가, 운반차량, 관련업체(도축장·사료제조·분변처리 등)의 소독시설, 소독장비 설치·운영 여부 및 소독 실시 기록부 비치·운영 점검

○ 가금운반차량의 소독장비 비치, 소독실시기록부 유지 및 소독 실시 여부

○ 철새도래지의 AI 차단방역 안내입간판 설치, 소독 및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여부

❑ 점검지역 : 6개 시·도(시·군·구 및 가축방역기관 등)

구분	점검 시·군	철새도래지	참고사항 [야생조류 AI 항원·항체 분리 지역 (11개소)]
경기	9 (이천,안성,평택,파주, 양주,화성,동두천,여주 ,용인)	6 (시흥 시화저수지, 여주 남한강, 파주 탄현, 양평 두물머리, 김포 고촌, 남양만 간척지)	1[안성 청미천('08 이전)]
충남	4 (천안, 아산, 서천, 부여)	6 (금강하구, 천수만, 풍세·곡교천, 병천천, 해미천, 금강(연기 남면지역))	3[아산 곡교천·풍세천, 천안 병천천('08 이전)]
전북	3 (익산, 고창, 부안)	3 (금강하구둑, 만경강, 고창 동림저수지)	-
전남	13 (나주,영암,화순,장흥, 여수,보성,담양,고흥, 구례,무안,순천,함평, 해남)	6 (해남 고천암, 주암댐, 순천만, 영산강, 영암호, 함평 대동저수지)	1[함평 대동저수지 ('08 이전)]
경북	3 (성주, 영천, 경산)	2 (고령 다산, 구미 해평)	1[경주 형산강('09.11.30)]
경남	1 (양산)	3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 양산 발생지)	1[창원 주남저수지 ('09.12.3)]

❑ 행정사항

○ 민관합동점검반의 방역현장 점검시 협조

○ 검역원 및 시·도(시·군·구)는 소속 공무원의 점검시 출장 조치

○ 확인서 징구시 관할 행정기관 출장자가 현장에서 수령 후 처분 추진

○ 점검결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과에서 취합 및 분석한 후 개선사항을 포함한 종합결과를 '11.4.27(수)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점검반원 중 농식품부 또는 검역원 소속 공무원이 반장이 되어 점검지역, 점검기간 등을 반원 및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 실시

❑ 향후계획

○ 방역실태 점검시 위반사항 조치(확인서 징구 및 현지 시정)

○ 출장결과 종합 평가 후 미비점 보완 조치 등

[붙임] 1. 점검결과 보고서
2. 점검표
3. 확인서

<붙임 1>

AI 방역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민관합동점검반 제출용>

□ 점검기간 : 2011. . ~ . ( )

□ 점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점검지역

구분	점검대상	점검결과		
		내용	지적사항	지적 및 조치내용
총괄 ※ 시·군·구 점검내역 합계	○ AI 방역 자체계획 수립·추진 여부	○ 총 - 시도 시군구	• 총 건	
	○ 집중관리지역 예찰팀 구성·운영(임상관찰 점검주기 등)	○ 총 반, 명	○ 건	○
	○ 가금사육농가 소독시설(장비) 보유, 기록부 유지 및 소독실시 등	○ 총 개소	• 총 건	
	- 종오리	- 개소	- 건	-
	- 육용오리	- 개소	- 건	-
	- 종계	- 개소	- 건	-
	- 산란계	- 개소	- 건	-
	- 육계	- 개소	- 건	-
	- 토종닭	- 개소	- 건	-
			- 건	-
	○ 사료업체 소독시설(장비) 보유, 기록부 유지 및 소독실시 등	○ 개소	○ 건	○
	○ 분뇨처리업체 소독시설(장비) 보유, 기록부 유지 및 소독실시 등	○ 개소	○ 건	○
	○ 도축장(가금류) 운반차량 및 어리장 등 소독실시 여부	○ 개소	○ 건	○
	○ 재래시장 소독실태	○ 개소	○ 건	○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자체계획 여부	○ 총 개소	○ 건	○
	○ 교육·홍보 추진 여부	○ 총 개소	○ 명	○

구분	점검대상	점검 결과		
		내 용	지적사항	지적 및 조치내용
( ) 시군구 ※시·군·구별 별도 작성 하여 제출	○ AI 방역 자체계획 수립·추진 여부	○ 총 - 시도 시군구	• 총 건	
	○ 집중관리지역 예찰팀 구성·운영(임상관찰 점검주기 등)	○ 총 반, 명	○ 건	○
	○ 가금사육농가 소독시설(장비) 보유, 기록부 유지 및 소독실시 등 - 종오리 - 육용오리 - 종계 - 산란계 - 육계 - 토종닭	○ 총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총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 - - - -
	○ 사료업체 소독시설(장비) 보유, 기록부 유지 및 소독실시 등	○ 개소	○ 건	○
	○ 분뇨처리업체 소독시설(장비) 보유, 기록부 유지 및 소독실시 등	○ 개소	○ 건	○
	○ 도축장(가금류) 운반차량 및 어리장 등 소독실시 여부	○ 개소	○ 건	○
	○ 재래시장 소독실태	○ 개소	○ 건	○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자체계획 여부	○ 총 개소	○ 건	○
	○ 기타(교육·홍보 추진 여부)	○ 총 개소	○ 명	○

※ 중앙점검반 출장자는 점검 시·군·구별로 각각 「AI 방역추진 점검표(총괄)」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출장 세부점검표, 지자체 계획 및 실적)와 함께 동물방역과로 제출

□ 특기사항(모범사례 등)

○

수신시각 4월12일 4:55PM

<붙임 2>

AI 방역실태 점검표

<가금류 사육농가>

□ 점검일자 :

□ 점검사항 : 도 시·군

<table>
<tr><td rowspan="5">연번</td><td colspan="6">농 가 현 황</td></tr>
<tr><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주소 (전화번호)</td><td rowspan="2">축종①</td><td rowspan="2">두수</td><td>축사면적</td><td></td></tr>
<tr><td>300㎡이상</td><td>300㎡이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1</td><td colspan="4">소독 시설</td><td colspan="2">특기사항</td></tr>
<tr><td>소독시설②
설치여부</td><td>소독장비
보유여부</td><td>소독실시
여 부</td><td>소독실시기록대장
비치, 기록 여부</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rowspan="5">2</td><td colspan="6">농 가 현 황</td></tr>
<tr><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주소 (전화번호)</td><td rowspan="2">축종①</td><td rowspan="2">두수</td><td>축사면적</td><td></td></tr>
<tr><td>300㎡이상</td><td>300㎡이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소독 시설</td><td colspan="2">특기사항</td></tr>
<tr><td>소독시설②
설치여부</td><td>소독장비
보유여부</td><td>소독실시
여 부</td><td>소독실시기록대장
비치, 기록 여부</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rowspan="5">3</td><td colspan="6">농 가 현 황</td></tr>
<tr><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주소 (전화번호)</td><td rowspan="2">축종①</td><td rowspan="2">두수</td><td>축사면적</td><td></td></tr>
<tr><td>300㎡이상</td><td>300㎡이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소독 시설</td><td colspan="2">특기사항</td></tr>
<tr><td>소독시설②
설치여부</td><td>소독장비
보유여부</td><td>소독실시
여 부</td><td>소독실시기록대장
비치, 기록 여부</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able>

※ 기재요령 : ① 축종 : 종오리, 육계, 산란계 등 세부적으로 기재
② 소독시설 : 축사면적 300~1,000㎡미만은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및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 가능하며, 축사면적 1,000㎡이상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AI 방역실태 점검표

<닭(오리) 도축장>

□ 작업장현황

○ 작업장명(축종) :

○ 점검일시 :

○ 소재지(주소/전화) :

○ 대표자 :

○ 자체검사원(성명) :

□ 점검사항

점 검 내 용	결 과
• 소독설비(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운영 여부 -당해 시설관련, 소독약 보관용기, 고압분무기 구비 -겨울철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 등) 설치 여부	○, × ○, ×
• 관리사무실 등에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 ×
• 가금류 수송용기(어리장), 적재함 및 외부 세척·소독 실시 여부	○, ×
•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재 등 운영 여부	○, ×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AI 방역실태 점검표

<가축운반차량>

□ 차량현황

○ 운반축종 :
○ 점검장소 :
○ 차량소유자 : (주소)
○ 운 반 자 : (주소)

○ 점검일시 :
○ 차량번호 :
(연락처)
(연락처)

□ 점검사항

점 검 내 용	결 과
•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여부 - 대상 : 가축·사료·가축분뇨 등 운반자	○, ×
•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여부 - 대상 : 가축·사료·가축분뇨 등 운반자	○, ×
• 소독실시기록부 기재는 옳게 하고 있는지(허위기재 여부) - 대상 : 가축·사료·가축분뇨 등 운반자	○, ×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수신시각 4월12일 4:55PM

<붙임 3>

확 인 서

<농장, 부화장, 종축장, 업체>

농장명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상기인은 2010년 월 일 시경 점검반의 AI 방역추진 실태 점검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

○

○

○

2011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수신시각 4월12일 4:55PM

확 인 서

<운반차량>

차량번호 :

차량소유 :

운 반 자 : **(주민등록번호 :)**

거 주 지 : **(전화번호 :)**

상기인은 2010년 월 일 시경 점검반의 AI 방역추진 실태 점검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 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적사항(위반사항)>

○

○

○

2011 년 월 일

확인자(운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수신시각 4월12일 4:55PM

<별첨>

AI 방역추진 점검시 참고자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방역관) ①~② <생략>
③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부화장·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가축방역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7조제4항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2항1호)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지역, 대상가축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16조제1항·제3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1호)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②제1항 각호의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당해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쥐·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법 제17조제1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2호)
⇒ 법 제17조제2항·제3항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3호)
⇒ 법 제17조제5항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4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8.7.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Ⅱ. 개별기준 제1호 및 제8호가목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라. Ⅱ. 개별기준 제5호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 당사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수신시각 4월12일 4:55PM

II.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2.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1호	50	200	500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2호			
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50	200	500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300	500
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300	500
라.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0	200	500
마.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200	500
6.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8.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			
가.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150	200
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라.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0	100	200
마.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9.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			
가.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150	200
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라.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0	100	300
마.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100
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17조제4항 본문, 법 제23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 법 제26조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수신시각 4월12일 4:55PM

③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도축장·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계란집하장의 경우에는 계란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④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별표1>

소독설비의설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서 차량의 진입로나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축사육시설 등 당해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消毒槽)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영업자

(1)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장치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집유장의 영업자
(1)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1)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당해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축산법에 의한 종축장의 운영자
(1) 당해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종축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당해 시설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축산법에 의한 부화장의 운영자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화용 알 및 난좌(卵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부화실 및 병아리방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아.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를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시설명		대표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전화 :)					
소 독 실 시 상 황						
연월일	소독실시대상 (차량번호)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독실시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신시각 4월12일 4:55PM

[별지 제7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차량의 종류		차량의 소유자	
차량의 용도		차량번호	
차고 소재지		(전화 :)	

소 독 실 시 상 황

연월일	소독장소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독실시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신시각 4월12일 4:55PM